

보건의료발전계획의 필요성과 방향

김 소 윤

연세대학교 의료법윤리학연구원장
연세대 의과대학 인문사회의학교실 의료법윤리학과장
SYOONKIM@yuhs.ac



이 동 현

연세대학교 의료법윤리학연구원 전문연구원
연세대 의과대학 인문사회의학교실 의료법윤리학과 연구교수
LEEDH1123@yuhs.ac



그 동안의 경과

지난 9월 4일 보건복지부와 대한의사협회는 「보건의료발전과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합의」라는 제목으로 합의문을 발표하였다. 주요한 내용은 코로나19라는 국가전체의 공중보건위기 상황 속에서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보건복지부와 대한의사협회가 협력하고 대한민국의 보건의료 발전이라는 궁극적인 목표를 위해 지역의료, 필수

의료, 의학교육 및 전공의 수련체계의 발전에 함께 노력하겠다는 것이다.

합의문의 내용 중 주목할 만한 사항은 보건복지부와 대한의사협회가 지역수가 등 지역의료지원책 개발, 필수의료 육성 및 지원, 전공의 수련환경의 실질적 개선, 건정심 구조 개선 논의, 의료전달체계의 확립 등의 주요한 보건의료현안을 의제로 하는 의정협의체를 구성한다는 것과 보건복지부가 해당 협의체와의 논의 결과를 ‘보건의료발전계획’에 적극

반영하고 실행한다는 것이다.

‘보건의료발전계획’은 지난 2000년 새로이 제정된 「보건의료기본법」에 근간을 두고 있으며 「보건의료기본법」의 내용을 살펴보면 ‘보건의료발전계획’은 매 5년마다 새롭게 계획을 수립하도록 되어 있다. 그리고 ‘보건의료발전계획’에는 보건의료 발전의 위한 기본목표와 방향, 관련 사업계획과 추진 방법, 보건의료자원의 활용, 보건의료전달체계 등의 국가 보건의료체계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을 총괄하여 종합적인 계획을 세우도록 명시하고 있다[1].

또한 ‘보건의료발전계획’의 수립과 진행은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와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확정하며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 등이 수립하여 시행하는 ‘지역보건의료계획’과 유기적 관계를 통해 계획 수립 등에 협조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보건의료기본법」에 법률로서 명시된 ‘보건의료발전계획’은 지난 20년간 단 한 차례도 수립된 바 없다. ‘보건의료발전계획’의 수립 및 시행과 협력적 관계에 있는 ‘지역보건의료계획’이 「지역보건법」상의 내용을 바탕으로 지난 1997년 ‘제1기 지역보건의료계획’이 수립된 이래 현재 ‘제7기 지역보건의료계획’이 시행되고 있는 상황에서 국가의 전반적인 보건의료체계에 대한 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해야 하는 ‘보건의료발전계획’은 안타깝게도 작성된 적이 없다[4].

반면 현재 보건복지부가 주관하고 있는 보건의료 관련법률 중 기본이 되는 다른 법률 「건강검진기본법」, 「사회보장기본법」, 「저출산·고령화사회기본법」은 각각의 5년 단위 장기계획을 수립하고 현재 진행하고 있는 상황이다. 그렇기 때문에 보건의료체계 전반의 기본이 되는 「보건의료기본법」의 목적

과 그 중요성을 생각한다면 적극적으로 논의가 시작되고 있는 현재의 시점에서 ‘보건의료발전계획’은 반드시 수립되고 시행될 필요성이 있다[1].

관련 연구와 국외 동향

‘보건의료발전계획’과 관련하여 보건복지부는 이미 지난 2018년 보건사회연구원을 통해 ‘보건의료발전계획 수립을 위한 기초연구’를 진행한 바 있다. 이 연구 역시 국가단위의 보건의료체계 전반에 대한 정책의 체계성과 연계성 측면에서 ‘보건의료발전계획’의 필요성을 지적하며 범정부적 차원의 협력과 참여를 통해 효율성과 접근성, 질적 측면에서 보건의료체계의 미래 방향성을 위한 ‘보건의료발전계획’의 방향성을 이야기 하였다[3].

정영호 외(2018) 연구에서는 ‘보건의료발전계획’의 수립방향과 목표 등을 제시하면서 현재의 중년세대,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베이비붐 세대(한국전쟁이 끝난 직후인 1955년부터 1963년 사이에 태어난 인구)가 후기 고령자로 변화하는 약 20년 후를 전망하여 방향성을 제시하였다. 이것은 결국 현재 대한민국 사회가 당면한 과제이며 미래사회의 지속가능성을 위해 필요한 측면에서 ‘보건의료발전계획’이 수립되어야 함을 보여준다. 또한 그 목표를 지역사회 중심의 보건의료체계의 구축, 지속가능하며 질적 측면이 보장된 의료자원의 공급, 생애주기별 관리를 통한 포괄적 보건의료의 보장, 예방 중심의 건강관리, 미래보건의료기술을 통한 질병의 극복과 보건의료산업, 재정확충의 지속가능성 측면에서 실행전력과 추진과제 등을 마련하였다.

한편, 국외의 상황을 살펴보면 이미 일본은 발 빠

르게 움직여 지난 2015년 후생노동성에서 「보건의료 2035」를 발표하였다. 이를 통해 일본은 보건의료발전계획을 단기(~2020년), 중·장기(~2035년)로 구축하여 보건의료체계와 자원의 투입에 대한 가치 극대화, 개인의 건강관리와 증진을 위한 개별적인 서비스의 제공, 코로나19와 같은 국제적인 공중보건의 위기 상황에서의 신뢰성 확보를 위한 방향성을 제시하며 보건의료체계 전반에 대한 발전방안을 구축하여 궁극적으로 고령사회를 대비한 향후 20년 후의 사회·경제상을 고려한 중장기 전략을 마련하고 있는 실정이다[6].

미국 역시 지난 1993년 제정된 「정부업무에 대한 수행과 성과에 관한 법(Government Performance and Results Act, GPRA)」과 해당 법률을 2010년 Obama 행정부 시절 개정된 「정부업무에 대한 수행과 성과에 관한 선진화 법(GPRA Modernization Act)」을 통해 대통령의 임기에 맞춰 매 4년마다 ‘보건부 전략계획(HHS Strategic Plan)’을 발

표하고 있다. ‘HHS Strategic Plan FY 2018 - 2022’가 현재 진행 중이며 국가 보건의료체계의 개혁과 현대화, 미국국민에 대한 평생 경제·사회적 복지의 강화, 미래보건의료기술을 포함한 의과학의 육성과 발전, 미국국민의 생활에 맞춘 건강관리, 효과성과 효율성에 기초한 보건의료체계 관리의 5가지 전략 목표를 중심으로 수행하고 있다[7].

이러한 국내·외적 환경과 논의에 맞춰 지난 2019년 대한민국의학한림원은 보건의료체계의 지속가능성과 변화 요구에 맞춰 그 동안 방치되어 왔던 ‘보건의료발전계획’의 새로운 로드맵을 제시한 바 있다. 2019년 10월 진행된 대한민국의학한림원의 ‘제13회 보건의료포럼’에서는 보건의료분야의 중요의제 25개 항목에 맞춰 기존의 장기계획들을 재분류하고 통합하여 중요의제 25개를 중요도와 시급성에 따라 논의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된 바 있다.



그림. 지속가능한 미래 보건의료체계 혁신을 위한 로드맵

출처: 박은철 (2019). 지속가능한 미래 보건의료체계 혁신을 위한 로드맵 개발. 대한민국의학한림원: 제13회 보건의료포럼 발표자료.

앞으로의 방향

결국 이러한 논의의 중심에서 현재 부재한 ‘보건의료발전계획’의 수립을 통해 그 동안 지속적으로 다양한 보건의료분야에서 난립되어 있는 수많은 계획을 전체적으로 살펴보고 각 부문별 계획을 일관적이고 효율적으로 종합하여 포괄할 수 있는 기본적인 중·장기 발전방향이 필요함을 보건의료계가 공감하고 있다는 것이다.

현재 논의되고 있는 방향성을 살펴보면 결국 ‘보건의료발전계획’은 다양한 보건의료분야의 계획들을 종합하여 미래의 고령사회와 인구구조 및 노동시장의 변화, 사회·경제적 여건, 코로나19와 같이 - 언제 발생하여 어떻게 확대될지 모르는 - 감염병 등의 문제 속에서 미래를 대비하기 위한 방향으로 설정될 필요가 있다.

이러한 측면에서 이미 지난 2019년 20대 국회에서는 당시 더불어민주당의 원혜영 국회의원의 대표 발의를 통해 「보건의료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이 논의된 바 있다. 해당 법률(안)은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 인구구조의 변화방향, 미세먼지 등의 기후변화를 통한 보건의료문제의 발생 등 거시적 관점에서 미래의 보건의료 관련 문제들이 증가함에 따라 기존의 5년 단위 ‘보건의료발전계획’으로는 지속적인 방향성을 제시하기 어렵다는 판단하여 5년, 10년, 20년 단위의 다양한 사회적 변화를 고려한 계획을 구분하여 수립하는 방안을 담고 있었다[5].

즉, 앞으로 제시될 ‘보건의료발전계획’은 법률에 명시된 5년 단위의 계획을 기본으로 변화하는 미래 보건의료의 발전방향에 맞춰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일본과 같이 미래의 사회·경제적 발전양상에 대한 예측 가능한 범위에서 장기적인 안목의 계획을

제시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보인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보건의료발전계획’의 내용이 중점적으로 담아야 할 방향은 결국 「보건의료기본법」이 가지고 있는 목적이다. 「보건의료기본법」은 보건의료 전반에 관한 국민의 권리·의무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에 대한 규정, 보건의료제도 내의 수요와 공급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하여 국가의 보건의료체계 발전과 국민의 보건 및 복지의 증진을 기본 목적으로 삼고 있다. 따라서 ‘보건의료발전계획’은 무엇보다도 국가의 보건의료체계 운영과정 속에서 국민과 국가의 역할과 책임을 규정함과 동시에 다양한 계획의 통합과 방향, 그에 따른 자원의 활용과 기술의 발전에 대한 내용을 포괄적으로 담아야 한다[1].

또한 이러한 포괄적 계획에서 간과하기 쉬운 미래의 보건의료기술에 대한 적용과 운영에 대한 방향성, 무엇이 궁극적으로 미래사회에 대비하여 국민의 건강증진에 긍정적인 방향을 가져올 것인가를 심도 있게 고민하여 추진해야 한다. 그리고 이러한 내용을 바탕으로 단기간에 추진가능한 과제와 전략,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추진해야 할 과제와 전략, 방향을 세부적으로 나누는 것이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앞으로 수립될 ‘보건의료발전계획’은 보건복지부가 계획하여 보건의료계에 계획을 전달하고 이를 수행하도록 조정해야 하는 것이 아님을 명확히 해야 한다. 앞서 언급한 의정합의문에도 명시되어 있듯이 ‘보건의료발전계획’은 정부부처와 관계기관, 보건의료계가 협력하여 계획의 기본 원칙과 방향성을 함께 정하고 이를 국가 전체적인 틀 안에서 운영해 나가야 한다. 이를 위해 지난 2018년 - 무려 2005년 이후 13년 만에 - 개최된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에게는 보다 다양한 보건의

료계의 목소리와 ‘보건의료발전계획’ 수립을 위한 다양한 의견을 청취하기 위한 고민과 노력이 절실히 요구된다[5]. 이런 맥락에서 의정협의체 논의결

과가 ‘보건의료발전계획’에 반영되는 과정을 통해 신뢰와 협치의 사회적 자산이 과연 만들어질 것인지 가늠해보는 시험무대가 될 수 있을 것이다.

참고문헌

- [1] 국가법령정보센터 (2020.12.02) 보건의료기본법[법령검색자료]. Retrieved from <https://www.law.go.kr/%EB%B2%95%EB%A0%B9/%EB%B3%B4%EA%B1%B4%EC%9D%98%EB%A3%8C%EA%B8%B0%EB%B3%B8%EB%B2%95>
- [2] 박은철 (2019). 지속가능한 미래 보건의료체계 혁신을 위한 로드맵 개발. 대한민국의학한림원: 제13회 보건의료포럼 발표자료.
- [3] 정영호, 고숙자, 배정은, 차미란, 최지희, ..., 최영임 (2018). 보건의료발전계획 수립을 위한 기초 연구. 보건복지부,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4] 조아진 (2018). 제7기 지역보건의료계획의 의의와 발전방향. 한국건강증진개발원 Khealth Issue, 51, 1-8.
- [5] 하경대 (2029.04.09). 보건의료발전계획, 장기적 설계 法 명문화. 의사신문. Retrieved from <http://www.doctorstimes.com/news/articleView.html?idxno=207365>
- [6] H&Consulting (2016). 일본의 「보건의료 2035」 정책 비전; 일본 후생노동성 「보건의료 2035」 정책간담회 제언서(보건산업 글로벌 동양 및 이슈조사). 한국보건산업진흥원. 1-32.
- [7] 미국 연방정부 보건부 (2020.12.02) HHS Strategic Plan FY 2018 - 2022[홈페이지검색자료]. Retrieved from <https://www.hhs.gov/about/strategic-plan/index.html>